

### 교육과정공동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1-1-12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2

2012.02.01.제정 2014.02.01.개정 2016.01.01.개정 2020.09.25.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과정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교육과정공동운영을 협정 체결한 대학(외국 대학 포함)의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 협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운영분야) 교육과정공동운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 1. 인문사회분야
- 2. 자연과학분야
- 3. 공학분야
- 4. 예체능분야

제4조(대학선별) 교육과정공동운영 대학(외국대학 포함)을 선별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평가인정 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또는 당해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대학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교육과정공동운영과정에 대한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외국대학 포함) 교수에 의한 수업(전임교수에 한함)
- 2. 본교의 교수와 외국의 대학 교수와의 협동수업(Co-Teaching)
- 3. 교육과정공동운영은 본교의 학과(계열)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
- 4.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공동운영 협약에 따른다.

**제6조(공동운영협약)** 교육과정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와 대학(외국대학 포함) 교육과정 공동운용 체결 협약에 따른다.

- 제7조(학점상호인정) ① 교육과정공동운영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공동운영에 참여한 대학(외국대학 포함)에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6조의 공동운영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정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에 준해 적용하며 대학 간의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명칭사용) 교육과정공동운영에는 국내의 대학과 외국의 대학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교육과정공동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1-1-12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2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외국대학 포함)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교무처』를 『교학처』 로 『산학처』를 『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5.12.24.)에 의하여 『산학·취업처』를 『산학 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학생산학취업처』를『산학처』로,『기획처』를『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